

국민연금 가입자 절반 '최저임금'

광주·전남 '월 소득 200만원 미만' 50만명...1년 새 5.8% 줄어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 17만5892명...전년보다 1.9% 늘어나

지난해 광주·전남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5.8% 줄어든 동안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9% 늘어나는 데 그쳤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소득 구간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으로, 1년 새 7.6% 증가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국민연금 가입자는 103만8487명으로, 전년(104만1170명)보다 0.3%(-2683명) 감소했다.

광주 가입자는 43만3762명에서 43만7173명으로 0.8%(3411명) 증가했지만, 전남은 60만7408명에서 60만1314명으로 1.0%(-6094명) 줄었다. 지난해 전국 가입자는 1926만명으로, 전년(1900만명)보다 1.3%(25만명) 증가했다.

1년 새 국민연금 가입자가 감소한 지역은 전남(-1.0%)과 울산(-0.8%), 경남(-0.7%), 대전(-0.6%), 전북(-0.3%) 등 5개 시도였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뉘보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 49.3%(21만5616명)·전남 46.7%(28만671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비중은 40.8%(1926만명 중 785만명)로,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평균을 웃돌았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입자 비중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서울(32.7%)이었고, 전북(52.7%) 비중이 가장 컸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해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지역민들의 지난 1년간 소득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수준'인 200만원 미만 구간은 많이 감소했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구간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광주·전남 가입자는 49만6287명으로, 전년(52만6609명)보다 5.8%(-3만322명) 감소했다. 광주는 22만8317명에서 21만5616명으로 5.6%(-1만2701명) 줄었고, 전남은 29만8292명에서 28만671명으로 5.9%(-1만7621명) 감소했다.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 감소율 4.6%(823만→785만명)을 웃돌았다.

광주·전남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소득자는 1년 새 7.6%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이 구간 광주·전남 가입자는 24만 8816명으로, 전년(23만1236명)보다 7.6%(1만 7580명) 늘었다.

광주 증가율은 8.7%(10만2889명→11만1816명)로, 세종(10.7%)에 이어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6.7%(12만8347명→13만 7000명)로, 전국 8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는 10만7433명에서 11만4192명으로, 1년 새 6.3%(6759명) 증가했다. 광주는 전년보다 9.1%(3914명) 늘어난 4만7057명, 전남은 4.4%(2845명) 증가한 6만7135명으로 나타났다.

광주 증가율은 대전(10.8%)과 강원(9.7%)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지만, 전남은 전국 평균(5.6%)을 밑돌며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다.

반면 월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입자 수는 전남에서 29명(0%)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지역 증가율이 1.9%에 불과했다. 지난해 광주·전남 400만원 이상 소득 가입자는 17만9192명으로, 전년(17만 5892명)보다 1.9%(3300명) 증가했다.

광주 증가율(5.5%·5만9413명→6만2684명)과 전남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 5.6%를 밑돌았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사업장 가입자 비중은 70.7%(104만명 중 73만 명)을 차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 임금인상을 지난해보다 높다”

600대 기업 2곳 중 한 곳 해당

국내 대기업 약 2곳 중 한 곳은 올해 임금인상률이 작년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2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은 48.9%로,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올해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작년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가 있는 회사는 7.5%, 노조가 없는 회사는 5.9%로 나타났다.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가 있는 회사의 4.2%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71.4%)이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서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임단협(임금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26.0%가 '작년보다 어렵다', 16.0%가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답했다.

노동 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협안 판결'(40.5%) 등이 꼽혔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페트병, 포인트로 바꾸세요 (주)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본관 지하 1층에 비치된 순환자일 수거기 '네프론' 사용 시범을 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일회용 컵이나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모아오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바꿔주는 '네프론'을 지난 9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관광하고 이자 더 받고” 남도사랑 뜨겁다

광주은행 '남도투어적금' 출시 30일만에 1만좌 돌파...전남 45곳 방문때 우대금리

광주은행이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내놓은 '남도투어적금'이 출시 30일 만에 가입 1만좌를 돌파했다. (사진)

광주은행은 '남도투어적금'이 지난달 27일 출시한 이후 한 달 만에 가입 1만264좌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2023년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내놓은 이 적금은 광주은행이 추천하는 전남 관광지 45선에 방문할수록 금리를 더 준다.

기본금리 2.3~2.5%에 스마트뱅크 앱을 이용해 관광지 방문을 인증하는 등 우대금리 최고 연 1.9%포인트를 더하면 연 4.4%까지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적금은 월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12개월제 또는 18개월제로 가입할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전남 관광객을 1억명 달성할 목표를 세웠다.

광주은행은 지난달 26일 전남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대표 관광지를 홍보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송중욱 은행장은 "전남·광주 대표은행의 사명감으로 '2022-2023 전남남도 방문의 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남 관광객 유치에 협조하고자 '남도투어적금'을 출시했다"며 "금융 상품에 담긴 전남 관광 이야기를 고객과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과 상생, 지역민과 동



광주은행 송중욱(오른쪽) 은행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달 맺은 '남도투어적금 출시 업무협약' 행사. <광주은행 제공>

행'의 경영이념을 근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남도투어적금' 외에 지역 특색과

공익적 가치를 담은 '5·18 공익통장 낚이 예적금'과 '광주·전남사랑카드', '명이남이카드' 등을 내놓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 소상공인 채무 조정 '새출발'

10월 '새출발기금' 접수...90일 이상 연체 순부채 60~80% 감면

코로나19로 인해 손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해준다.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드는 구조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과 같다.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때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맞게 최대 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연장된다.

최대 1년(부동산담보대출은 3년)까지 분할상환금 납부 유예도 신청할 수 있다. 사정이 매우 어려운 경우 1년간 이자까지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자주가 객관적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바꿔준다.

신용점수에 영향이 적은 연체일 30일 이내인 경우 연 9% 초과 금리에 한해 연 9%로 조정되고, 신용점수 하락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연체 30일 이후인 경우 상환 기간 내 연 3~4%대(잠정)의 단일

금리로 하향 조정된다.

채무조정 한도는 신복위 워크아웃과 같은 15억원(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이다.

채무조정 차주에겐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뒤따른다.

금융회사에 이미 장기연체자로 등록된 90일 이상 연체 부실 차주의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이 기간 해당 차주는 신규 대출은 물론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원으로, 금융위는 약 30만~40만명의 소상공인이 빚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총 220만명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액 660조원의 약 5~6% 수준에 해당한다.

채무조정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새출발기금.kr)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전용 콜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 놓은' 종부세 완화 입법 1세대 1주택 10만 '발 동동'

30일 법안 처리 불발 뎀 세금중과 고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테드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0일까지 종부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최대 10만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임시적 2주택 주택 수 제외·1세대 1주택 특별공제(14억원) 등 종부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달 내로 국회에서 종부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법에 근거한 신청서식(시행규칙 개정 사안)을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없으며, 특례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할 수 없다.

법정 신청 기간(9월 16~30일) 내 특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 경우 납세자들에게는 오는 11월 말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송달된다.

특히 이시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임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들에게 대해서는 현행 세법에 따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들은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에서도 제외되며, 전년 대비 세 부담은 1주택자와 달리 최대 3배(세 부담 상한 300%)까지 늘어날 수 있다.

중과 고지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임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으

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40만~50만명에 달한다.

법안 처리 기한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30일이다. 오는 29일이나 30일 오전에는 기재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안내·고지 없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 신고해야 하므로,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납세자 신고 내역 확인 결과 추가 환급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국고로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도 발생한다. /연합뉴스

■ 로또복권 (제103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2	5	11	17	24	29	9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276,406,507				19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일치	38,864,942				104	
3	5개 숫자일치	1,233,055				3,278	
4	4개 숫자일치	50,000				154,929	
5	3개 숫자일치	5,000				2,473,576	